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본점

2. 조치일 : 2020. 6. 26.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절차 개선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 등 수출금융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업무절차에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미흡

은행 내규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신고필증이나 선하증권 등을 이용한 실제 수출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절차를 거쳤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출환어음 관련 자체 점검리스트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협은행은 차주가 동일한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 시점 또는 지점을 달리하여 중복 매입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미회수 위험에 관한 취급유의 안내를 강화하고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승인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차주별 외화여신한도 금액 및 상세 변동내역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수출신고번호 또는 선하증권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수출환어음 중복매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매입이력을 관리하도록 내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

무신용장 방식 수출채권에 대한 개별 매입한도를 두어 동 채권 매입업무시 한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출채권 매입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미흡

수출환어음의 부당매입 사례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매입한도 축소 등의 자체 통제절차의 근거를 내규에 명시하고, 수출환어음 관련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결과를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내규를 정비하여 부당매입 개연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